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7. 9 선고 2018가단56085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. 30 선고 2019나44189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7. 9 선고 2018가단56085 판결

전문

원 고 A연합회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

담당변호사 이동규

피 고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

담당변호사 홍명호, 임웅찬, 윤지영, 한민구, 이상훈, 김성민, 이소

라, 조인형

변론 종결 2019. 5. 21.

판결 선고 2019. 7. 9.

주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17,619,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6. 28.부터 2019. 7. 9.까지연 5%, 그

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5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235,238,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6. 28.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%,
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원고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C과 사이에 D 개인택시(이하 '원고 측 차량'이라 한다)에 관하여
기간을 2016. 11. 27.부터 2017. 11. 27.로 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. 피고는 E
차량(이하 '피고 측 차량'이라 한다)의 자동차보험회사이다.

나. C은 2017. 6. 3. 05:28경 원고 측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F지하차도 앞사거리를 G
아파트 쪽에서 H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. 그곳 앞쪽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, 당시
신호등은 적색 점멸 신호였다. C은 일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지나려 하였다. 그때 I가 피고 측
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측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하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는 도로를 통해
교차로로 들어오게 되었다. 그곳앞쪽 교차로 역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, 당시 신호등은 황색
점멸 신호였다. 원고측 차량이 교차로로 들어와 채 빠져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교차로로 들어온 피고
측 차량의 앞부분이 원고 측 차량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. 그 충격으로 원고 측 차량이

회전하면서 왼쪽 뒷부분으로 교차로 밖 맞은편 도로에 정차 중이던 J(66세) 운전의 K 그랜저XG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뒤집어졌다.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측 차량의 승객 L는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5:48경 M병원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 한다).

다.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8. 6. 27.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392,064,930원을 지출하였다[그중 합의금 부분은 L의 유가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9179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확정된 액수를 원고가 지급한 것이다]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9호증, 을 제1, 2호증(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가지번호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청구 요지

원고 측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교차를 거의 통과할 무렵,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측 차량이 앞범퍼 부위로 원고 측 차량의 오른쪽 뒷범퍼 및 뒷헨더를 충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. 피고 측 차량의 운전자인 I는 교차로에 원고측 차량이 진행함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. 따라서 원고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의 비율은 4:6이 되어야 한다.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392,064,930원을 지출하였으므로, 그중 피고 측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235,238,958원(= 392,064,930원 × 60%)을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.

3. 구상권의 발생에 관한 판단

가.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, 원고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의 비율은 7:3이다.

① 원고 측 차량 운전자의 경우 개인택시 기사로서 전방 적색 점멸 신호의 의미와 이를 위반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결과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교차로에 들어와 그대로 나아갔고, 피고 측 차량 운전자의 경우전방 황색점멸신호였으나 교차로에 들어왔으며, 두 운전자 모두 적절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중대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다.

② 비록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원고 측 차량이 적색 점멸 신호에 먼저 교차로를 진입한 점을

고려하더라도,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에 적색 등화가 점멸되는 경우 '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 또는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'는 규범이 지켜져야 하고, 그 위반은 무겁게 평가되어야 한다. 이는 도로의 굴곡, 형상, 교통 혼잡도 등 다양한 사정 및 종전 사고 발생 정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방향 교차로 진입도로에 적색 점멸 신호가 주어진 경우 진입차량이 일시정지한 후 교통 상황에 주의하여 진행하지 않으면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경고를 무시한 것으로, 일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범을 위반한 것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다.

③ 두 차량의 당시 속도 등 이 사건 사고를 둘러싼 제반 사정, 교차로 사고 발생시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실무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.

나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돈 중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담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판단

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, 그것이 부담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는바, 이러한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,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, 그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기준,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, 소송물가액,사건의 난이도, 소송진행과정,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.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은 자기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전액 그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이고, 자기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소송비용부담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(대법원1997. 4. 8. 선고 96다54232 판결 참조).

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소송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더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보수기준, 소송물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, 별지 기재 지출 비용 합계 392,064,930원은 모두 구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기초채권에 포함되고, 그중 피고의 부담부분은 117,619,479원(= 392,064,930원 × 30%, 원 미만은 버림)이 된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7,619,47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비용 지출일 다음 날인 2018. 6. 28.부터 피고가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. 7. 9.까지 민법상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5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.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국식

별지

입출금처			입출내역	계	입출금일자
		외2명	가불금	50,000,000	2017.07.21
		병원	치료관계비	749,630	2017.07.31
변호사		법률사무소	소송및구상비용	15,300	2017.08.11
		외 2명	합의금	339,000,000	2018.06.27
변호사		법률사무소	변호사보수(착수금/	2,300,000	2018.06.22
				392,064,930	